

1996. 3.

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총 무 위 원 회

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. 3. 6. 충 주 시 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6. 3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 14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

○ 제 1차 위원회 (1996. 3. 11.) 상정, 질의.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)

가. 제 안 이 유

- 현행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과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융자기간은 1년 이내 (1회 6개월 연장가능)
⇒ 융자기간은 1년 이내 (1회 1년 연장가능)
- 적용되는 위임 상위법률 명칭 정정
(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→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에관한법률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상위법률 명칭에 맞추어 조례문구를 정비함은 당연한 조치이며, 자금압박으로 인한 지방중소기업의 지원확대 차원에서의 용자상환 기간연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.답변요지

[질 의]
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이 제조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건설업체등 일반업체도 해당되는 것인지?

☞ 답 변

- 당초에는 지원대상을 제조업체에 한정을 하였으나, 현재는 제외규정을 두지 않고, 용자기준의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음.

[질 의]

- 용자금액 및 상환방법을 확대할 용의는?

☞ 답 변

- 용자금액은 특별회계에서 30억원, 충북은행에서 30억원을 출자하여 운영중으로 현재로서는 용자금액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,
- 당초에는 용자금액을 2억원정도로 하고, 용자상환기간도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추진하였으나,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도 용자금액을 1억원 한도액에 1년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으며, 상부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시 상부기관으로 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용자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음.

5. 심사 결과

○ 원안 가결

6. 부 임

○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주시 조례 제 호

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"을 "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
관한법률"로 한다.

제6조 제6호중 "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"를 "기타 지원이
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체"로 한다.

제10조 제5항중 "6개월간"을 "1년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